

## 장외파생상품거래기본계약서 개정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<b>제1조 - 제4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5조 귀책거래종료사유</b>                      거래당사자 또는 그의 신용제공인(이하 "당사자 등"이라 한다)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것으로 본다.(후략)</p> <p>14. <u>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연체정보, 대위변제, 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</u></p> <p>15. (생략)</p> <p><b>제6조 - 제18조 &lt;생략&gt;</b></p>	<p><b>제1조 - 제4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5조 귀책거래종료사유</b>                      &lt;좌동&gt;</p> <p>14. 당사자 등에 대하여 <b>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</b>이 있거나 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, 대위변제·대지급정보, 부도정보, 관련인정보,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</p> <p>15. (좌동)</p> <p><b>제6조 - 제18조 &lt;좌동&gt;</b></p>	<p>법원의 최종적인 등재 결정이 있고 난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 개선</p>